

긴급 입찰 공고 사유서

□ 입찰건명 : 2025년도 인쇄업체 선정 및 단가 계약

□ 계약기간 : 2025.7.1. ~ 2027.6.30.

□ 입찰방법 : 긴급경쟁입찰(단가계약)

□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 '25.6.30.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불입)

□ 긴급입찰공고 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붙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 ◇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 시행
- ※ 동 지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5. 6. 30.까지 적용할 수 있음

- (긴급입찰) '25.6.30.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 * '25.6.30일까지 입찰공고되는 계약분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재정집행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이내 → 5일 이내
- * 신규 선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이내 → 5일 이내
- * 계약상대자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규 계약부터 계약 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
-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확대*
- * '25.6.30.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